

예금거래기본약관

이 예금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_____ 새마을금고(이하 “새마을금고”라 한다)와 거래처(또는 “예금주”이하 같다.)가 서로 믿음을 바탕으로 예금거래를 빠르고 틀림없이 처리하는 한편, 서로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다. 새마을금고는 이 약관을 사무소에 놓아두고, 거래처는 업무시간 중 언제든지 이 약관을 볼 수 있고 또한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1조(적용범위) 이 약관은 새마을금고와 거래처 사이의 모든 예금거래(이하 “거래”라 한다)에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거치식예금약관 및 적립식예금약관과 함께 적용한다.

제2조(실명거래) ①거래처는 실명으로 거래하여야 한다.

②새마을금고는 거래처의 실명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 증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서류의 제시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거래처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조(거래장소) 거래처는 예금계좌를 개설한 사무소(이하 ‘개설 사무소’라 한다)에서 모든 예금거래를 한다. 다만, 새마을금고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무소, 다른 새마을금고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현금자동지급기·현금자동입출금기·컴퓨터·전화기 등(이하‘전산통신기기라 한다)을 통하여 거래할 수 있다.

제4조(거래방법) 거래처는 새마을금고에서 내준 통장(증서, 전자통장을 포함한다) 또는 수표·어음으로 거래하여야 한다. 그러나 입금할 때와, 자동이체약정, 전산통신기기이용약정 등에 따라 거래할 때에는 통장없이도 할 수 있다.

제5조(인감, 비밀번호 등의 신고) ①거래처는 거래를 시작할 때 인감 또는 서명, 비밀번호,성명,상호,대표자명,대리인명 주소 등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비밀번호 입력기 (이하 “PIN-Pad” 라 한다)에 의하여 거래처가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 거래처가 새마을금고에 내점할 수 없는 경우 거래처는 개설된 예금의 첫거래 전에 새마을금고가 정한 방법에 따라 전산통신 기기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거치식·적립식예금은 비밀번호를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③거래처는 인감과 서명을 함께 신고하거나, 인감 또는 서명을 추가 신고할 수 있다.

제6조(입금) ①거래처는 현금이나 곧 추심할 수 있는 수표·어음·기타 증권(이하'증권'이라 한다)등으로 입금할 수 있다.

②거래처는 현금이나 증권으로 계좌송금(거래처가 개설 사무소 이외에서 자기계좌에 입금하거나, 제3자가 개설사무소 또는 다른 사무소,다른 새마을금고나 다른 금융기관에서 거래처 계좌에 입금하는 것)하거나, 계좌이체(다른 계좌에서 거래처계좌에 입금하는 것)할 수 있다.

③증권으로 입금할 때 입금인은 증권의 백지보충이나 배서 또는 영수기명날인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새마을금고는 백지보충 등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④입금하는 증권이 수표나 어음일 때 새마을금고는 소정금액란에 적힌 금액으로 처리한다.

제7조(예금이 되는 시기) ①제6조에 따라 입금한 경우, 다음 각호의 시기에 예금이 된다.

1. 현금으로 입금한 경우 : 새마을금고가 이를 받아 확인하였을 때
2. 현금으로 계좌 송금하거나, 계좌 이체한 경우 : 예금원장에 입금 기록이 된 때
3. 증권으로 입금하거나 계좌 송금한 경우 : 새마을금고가 그 증권을

교환에 돌려 부도 반환시한이 지나고 결제를 확인한 때. 다만, 개설 사무소에서 지급하여야할 증권은 그날 안에 결제를 확인한 때
②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증권이 자기앞수표로 지급제시기간 안에, 사고신고가 없으며 결제될 것이 틀림없음을 새마을금고가 확인하였을 때에는 예금원장에 입금 기록이 된 때에 예금이 된다.

③새마을금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 및 제2항의 확인 또는 기록을 신속히 하여야 한다.

제8조(증권의 부도) ①제6조 제1항에 따라 입금한 증권이 지급 거절되었을 때에는 새마을금고는 그 금액을 예금원장에서 뺀 뒤, 거래처(무통장입금일 때에는 입금의뢰인)가 신고한 연락처로 그 사실을 알린다. 다만, 통화 불능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사실을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새마을금고는 지급 거절된 증권을 그 권리보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금한 사무소에서 거래처(무통장입금일 때에는 입금의뢰인)가 반환 청구할 때 돌려준다.

제9조(이자) ①이자는 원을 단위로 약정한 예치기간 또는 제7조에 따라 예금이 된 날(자기앞수표·가계수표는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새마을금고가 정한 이율로 셈한다.

②새마을금고는 예금종류별 이율을 적은 예금이율표를 사무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치·게시하고, 이율을 바꾼 때에는 그 바꾼 내용을 사무소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1개월 동안 게시한다.

③제2항에 따라 이율을 바꾼 때에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바꾼 날로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하며, 거치식·적립식예금은 계약 당시의 이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예금은 바꾼 날로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한다.

④변동이율을 적용하는 거치식·적립식예금은 최초 거래 시 이율적용방법을 통장에 표시하며, 또한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적립식예금은

이율을 바꾼 때마다 바뀐 이율을 통장에 기록하여 안내한다.

⑤거래처가 실제 받는 이자는 제1항에 따라 셈한 이자에서 소득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원천 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이다.

제10조(지급·해지청구) ①거래처가 통장으로 예금·이자를 찾거나 예금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한 비밀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적고, 거래인감을 날인하거나 서명감과 일치되게 서명된 지급 또는 해지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처가 PIN-Pad기에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지급 또는 해지청구서에 비밀번호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②거래처가 자동이체·전산통신기기 등을 이용하여 찾을 때에는 그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1조(지급시기) ①입출금이자유로운 예금은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한다. 이때 댄백기업자유예탁금은 먼저 예금한 금액부터 지급한다.

②거치식·적립식예금은 만기일이 지난 다음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한다.

제12조(양도 및 질권설정) ①거래처가 예금을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하려면 사전에 새마을금고에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경우에는 양도나 질권설정을 할 수 없다.

②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질권 설정할 수 없다.

제13조(사고·변경사항의 신고) ①거래처는 통장·도장·카드 또는 증권이나 그 용지를 분실·도난·멸실·훼손한 경우에는 곧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할 때에는 업무시간 중에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다음 업무일 안에 서면 신고하여야 한다.

②거래처는 인감·서명·비밀번호·성명·상호·대표자명·대리인명·주소·전화번호 기타 신고사항을 바꿀 때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

만, 비밀번호는 서면신고 없이 전산통신 기기를 이용하여 바꿀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비밀번호 등 새마을금고에서 정한 요건이 맞으면 새마을금고는 새로운 비밀번호로 변경 처리한다.

③거래처는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일부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새마을금고가 정한 방법에 따라 전산 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는 새마을금고가 이를 접수한 뒤 전산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데 걸리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기며 전산장애 등 불가 항력적인 사유로 처리하지 못한 때에는 복구 등 사유 해제시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신고를 철회할 때에는 거래처 본인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4조(통장, 카드의 재발급 등) 제13조에 따라 통장·도장·카드에 대한 사고신고가 있을 때에는 새마을금고는 신고인이 거래처 본인임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친 뒤에 재발급하거나 지급한다.

제15조(통지방법 및 효력) ①새마을금고는 오류의 정정 등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 통보할 수 있다. 이 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경우, 그 통화자가 새마을금고의 통지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래처에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②새마을금고가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외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③새마을금고는 예금계약의 임의해지 등 중요한 의사표시를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통지가 거래처에 도달되어야 의사

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다만, 관계법령 또는 어음교환소규약 등에 의하여 예금계약을 해지한 경우나 거래처가 제13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하여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면책) ①새마을금고는 예금지급청구서,증권 또는 신고서 등에 찍힌 인영(또는 서명)을 신고한 인감(또는 서명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예금지급청구서 등에 적힌 비밀번호나 PIN-Pad기를 이용하여 입력된 비밀번호가 신고한 것과 같아서 예금을 지급하였거나 기타 거래처가 요구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이나 그 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새마을금고가 거래처의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산통신기기 등을 이용하거나 거래정보 등의 제공 및 금융거래명세 등의 통보와 관련하여 새마을금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계좌번호, 비밀번호등의 금융정보가 새어 나가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새마을금고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새마을금고가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로 주의 깊게 실명확인하거나 실명전환한 계좌는 거래처가 실명확인증표 또는 서류의 위조·변조·도용 등을 한 경우, 이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새마을금고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거래처가 제13조 제1항, 제2항, 제4항의 신고나 절차를 미루어 생긴 손해에 대하여 새마을금고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새마을금고는 거래처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제17조(수수료) ①거래처가 개설사무소 아닌 다른 새마을금고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전산통신기기 등을 통하여 거래할 때 새마을금고

는 온라인수수료나 추심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②새마을금고는 제1항의 경우 외에도 자기앞수표 발행 등을 원하거나 거래처 잘못으로 통장재발행 등을 요청하는 경우 그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과 관련한 수수료표는 사무소에 놓아두거나 게시한다.

제18조(오류처리 등) ①새마을금고가 예금원장이나 통장거래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처리하였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바르게 고치고 그 사실을 거래처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거래처는 거래를 마친 때 그 내용이 맞는가를 확인하고,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에는 바르게 고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새마을금고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바르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예금의 비밀보장) ①새마을금고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 관한법률등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처의 거래내용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남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②새마을금고는 거래처가 전화 등으로 무통장입금(송금 포함) 또는 예금잔액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때에는 명의인·계좌번호·비밀번호(자동응답 서비스(ARS)는 계좌번호·비밀번호)가 맞으면 그 요청자를 본인으로 여겨 입금(송금)을 하거나 입금인, 입금액, 예금잔액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금융거래 정보누설 등으로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0조(약관의 변경) ①새마을금고는 이 약관이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 예금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 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한달간 사무소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하여

야 한다.

②약관변경의 내용이 거래처에 불리한 경우에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거래처에 알린다.

1. 제1항에 의한 게시
2. 거래처가 신고한 전자우편(E-mail)에 의한 통지
3. 현금자동지급기/현금자동입출금기 설치장소에 게시
4. 거래통장에 표기
5. 인터넷뱅킹 가입고객의 경우에는 인터넷뱅킹 초기화면에 게시

③거래처는 제1항 및 제2항의 고지후 변경약관 시행일 전영업일까지 서면에 의한 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내에 거래처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새마을금고에 도달하지 않으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21조(약관적용의 순서) ①새마을금고와 거래처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약관조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 예금약관에서 정한 사항이 다를 때에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이나 거치식·적립식 예금약관을 먼저 적용한다.

③이 약관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 예금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따로 약정이 없으면 관계법령, 어음교환소규약을 적용한다.

제22조 삭제<2008.4.8>

제23조(종합통장에 의한 거래) ①종합통장(이하 “이 통장” 이라한다.)은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중 1개계좌를 기본계좌로 하여 본인의 거치식·적립식예금,출자금, 공제료납입금(이하 “연결계좌” 라 한다) 등을 하나의 통장으로 연결시켜 계좌간 자동이체거래가 가능하며 거래처의 신용도에 따라 자동대출이 허용되는 통장을 말한다.

②이 통장의 범위는 입출금이자유로운통장에 한하며, 기본계좌와 연결된 계좌는 계좌 별로 개별통장을 발행한다.

③기본계좌에서의 자동이체약정을 한 경우 새마을금고는 약정내용에 따라 별도의 청구서 없이 연결계좌에서 출금하여 거래처의 기본계좌에 입금하거나 기본계좌에서 출금하여 연결계좌에 입금한다.

④이 통장에 의한 대출거래는 새마을금고가 정한 자동대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별도의 약정을 하여야 한다.

⑤기본계좌의 예금잔액을 초과하여 지급청구 또는 각종 자동이체청구가 있을 때에는 따로 약정한 대출한도까지 부족액을 자동적으로 지급 또는 이체한다.

⑥거래처는 기본계좌 해약시 대출원리금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변제한 이후에 해지할 수 있으며, 연결계좌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통장을 발행할 수 있다.